

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의견청취) 구청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, 장애인단체, 전문가,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
2.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
3.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
4.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
5.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
6.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
7.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
8.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 지원 사업

9.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·돌봄 지원 사업
10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
11.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
12.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
13.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센터의 관리·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, 이를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센터는 운영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, 장애인단체, 전문가,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6조(발달장애인 지원 사업) 구 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2. 발달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3.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4.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, 교 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5.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 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<p>제3조의2(의견청취) 구청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조에 따 라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, 장애인단체, 전 문가,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발달장애인 지원 사업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발달 장애인 인식개선 및 홍보 사 업 2.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.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.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 5.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 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
 ③ 센터의 조직, 시설, 운영 방법, 교육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며, 해당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

6.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

7.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

8.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 지원 사업

9.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·돌봄 지원 사업

10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 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

11.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 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

12.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

13.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③ 센터의 관리·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, 이를 센터의 인터넷 홈

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센터의 업무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8조(센터의 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센터는 운영과 그 밖에 발달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, 장애인단체, 전문가, 발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관 련 법 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사소통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조단체의 결성 등)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(自助團體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조기진단 및 개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,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.23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

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·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·치료에 관한 정보제공,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,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.23>
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,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1.23>

제24조(재활 및 발달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6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로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, 전시관, 박물관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·참여·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, 놀이기구,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거주시설·돌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21. 6. 8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[제목개정 2021. 6. 8.]

제29조의2(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8.]

제29조의3(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(이하 “최중증 발달장애인”이라 한다)에게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 긴급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·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 “통합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,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2. 6. 10.]

제32조(휴식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·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장애인복지법

제5조(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7조 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12. 22.>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-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